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M&A의 세제개선방안

1998. 6.

연구위원 김 정 국

연구원이용무

한국증권연구원

— <著者 註> —

본 논문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M&A의 과세제도와 관련된 issue들의 논점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관련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M&A 세제부담의 제거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연구방법이 깊지 못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개선과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의견들이 추후 연구 질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독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원하며 그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본 연구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삼일회계법인의 윤인희 회계사님과 영화회계법인의 김종철 회계사님, 그리고 저희들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수신인: 김 정 국

이 용 무

e-mail: kufe@ksri.org

Tel: (02)3771-0680~5

Fax: (02)3771-0687

< 목 차 >

I. 서론	1
II. 기업구조조정 개요	3
1. 기업구조조정 정의	3
2. 기업구조조정 유형	3
가. 기업인수·합병방식	4
나. 기업분할방식	5
다. 사업교환방식	11
3. 기업구조조정 관련정책	11
III. M&A 관련세제	15
1. 국내 M&A 과세제도	15
가. 기업합병 과세제도	15
나. 기업인수 과세제도	24
다. 구조조정관련 과세제도	28
2. 외국 M&A 과세제도	35
가. 미 국	35
나. 일 본	38
다. 프랑스	40
라. 독 일	41
마. 시사점	43
IV. M&A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	47
1. 유형고정자산 평가중에 대해 과세이연제도 적용	48
2.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허용	50
3.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합병법인 승계허용	52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의 완화	55

5.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제외	58
6.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적용기준 완화	60
7. 합병비율산정시 관계법률간 기업가치 평가기준의 일치	63
8. 피합병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면제	66
9.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산에 비업무용토지 포함	68

V. 결 론	71
---------------------	-----------

참고문헌	73
-------------------	-----------

<부록A> 기업구조조정관련 개정세법	77
----------------------------------------	-----------

<표 차례>

<표 III-1 > 각국별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비교	46
<표 IV-1 > M&A관련 세제부담요인	47

<그림차례>

<그림 II-1> 매각(divestiture)	6
<그림 II-2> 분리공개(equity carve-outs)	7
<그림 II-3> 분리설립(spin-off)	8
<그림 II-4> 분리독립(spilt-off)	9
<그림 II-5> 분리정리(spilt-up)	10
<그림 II-6> 사업교환(business swaps)	11

要 約

기업의 구조조정방식의 주요 유형으로는 M&A, 기업분할, 사업교환방식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의 포괄적 인수를 원칙으로 하는 합병보다는 개별적 인수를 원칙으로 하는 영업의 양수·도를 선호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합병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처리와 과도한 조세부담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M&A 활성화측면에서 세법상 어떠한 조세부담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M&A에 대한 세제부담요인으로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부인 규정,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합병후 합병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문제, 합병비율산정시 관계법률간 기업가치평가문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불허문제, 합병시 증여의제 적용문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세제개선 방안으로는 합병차익중 유형고정자산 평가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적용,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허용,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합병법인 승계허용,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의 완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적용 제외, 합병시 증여의제 적용기준 완화, 기업가치평가로 인한 합병비율산정시 세법과 증권거래법상 평가기준의 일치, 합병의 경우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산에 비업무용토지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I. 서론

우리 나라는 현재 IMF관리체제하에 있는 바 기업들의 연쇄부도에 의한 부실자산의 증가로 인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법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개·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들 처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M&A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불허문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계열사간 상호빚보증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기업분할제도 및 기업퇴출제도 등 구조조정 관련법률제도의 여건조성 미비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본래 우리 나라가 오랜 기간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체제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단기간 내에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겪지 않고는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IMF경제체제에 있다. 이런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부터 제거해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제반여건은 M&A, 기업분할, 사업교환

방식 등의 구조조정유형에 대한 법률적 체제정비와 그 활용여부에 달려있다. 기업구조조정방식중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중의 하나로는 M&A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구조조정방식으로 기업간의 포괄적 인수를 원칙으로 하는 합병보다는 개별적 인수를 원칙으로 하는 영업의 양수·도를 선호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업계 현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합병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처리와 과도한 조세부담이 합병당사자간에 큰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¹⁾. 특히, 조세부담의 증가는 M&A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M&A 그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연기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M&A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의 개혁과 효율성을 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M&A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들이 세법상 어떠한 조세부담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국인 시각에서 본 우리 나라의 M&A에 대한 최대 장애요인으로는 합병가격차이와 경영권에 대한 집착을 뽑고 있다. 즉, 합병당사자간의 가격차이가 30~50%차이가 나는 관계로 인해 이에 대한 조정이 쉽지가 않고 더욱이 지분을 50%이상 넘기지 않으려는 대기업들의 경영권집착태도가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I. 기업구조조정 개요

1. 기업구조조정 정의

기업구조조정이란 시장내의 경쟁압력에 의해 기업 스스로가 제품 및 시장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개편, 인력의 재배치 및 감축,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용,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 구조조정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의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능동적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2. 기업구조조정 유형

기업구조조정의 유형으로는 크게 기업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기업인수합병(M&A)방식과 이를 역방향으로 축소하는 기업분할방식, 그리고 사업교환방식 등이 있다²⁾.

2) 정광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 활용방안,” 세미나자료, 한국무역협회, 1998. 3. pp.25-30.

이재우, “IMF체제와 기업구조조정정책,” 기업구조조정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1998. 4. pp.25-33.

신찬수, 이철송, 정준우,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95-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5. 12, pp.19-23.

가. 기업인수·합병(M&A)방식

기업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방식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는 기업합병(merger)방식과 인수기업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방식이 결합된 방식을 의미한다.

합병(merger)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되는데 흡수합병은 어느 일방의 회사가 소멸하여 어느 존속회사에 흡수되는 방식을 의미하고 신설합병은 쌍방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이 어느 특정회사가 신설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인수(acquisition)는 크게 자산인수와 주식인수로 나누어지는데 자산인수는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취득·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영업양수, 중요자산의 매수 등이 있다. 주식인수는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완전히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개별적 취득방식, 주식시장에서의 매집방식, 주식공개매수방식, 제3자 배정증자방식, 전환사채 취득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방식 등이 있다.

나. 기업분할방식

기업분할방식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핵심역량을 공유하지 않은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경영효율화 및 전문화를 증대시키고자 활용되는 방식이다. 기업분할방식은 외부자본의 유치여부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되는데 우선 외부자본유입으로 기업분할이 이루어지는 분리매각(divestiture), 분리공개(equity carve-outs) 방식이 있고, 외부자본이 없이 단독으로 기업분할이 이루어지는 분리설립(spin-off), 분리독립(split-off), 분리정리(split-up)하는 방식이 있다.

1) 분리매각(divestiture)

분리매각(divestiture)방식이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조정 유형으로서 불필요한 사업부문(자산 및 영업권)이나 자회사를 분할한 다음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기업구조를 재편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리매각의 방식으로는 크게 영업 및 자산양도 방식과 지분양도 방식으로 구분되며 매각물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된다.

영업양도는 인수대상 기업의 판매망이나 영업권 등 사업부문과 그에 따른 자산 및 설비를 처분하는 것이며, 자산양도는 영업양도의 한 유형으로 인수자가 공장이나 설비 등 자산만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방식이다. 영업양도는 특정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매각하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정리과정에서 많이 활용된다.

지분양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채권·채무관계가 포괄승계된다는 점에서 자산양도에 비해 그 절차가 간단하나 인수자에게 돌발부채 등 위험성이 높은 방법이다. 그러나 지분양도는 계열사간 자금대차, 상호지급보증 등 문제가 선결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분양도는 부실기업정리의 수단보다는 정상적인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림 II-1> 매각(divestiture)



자료: 이재우, “IMF 체제와 기업구조조정 정책,” 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1998. 4.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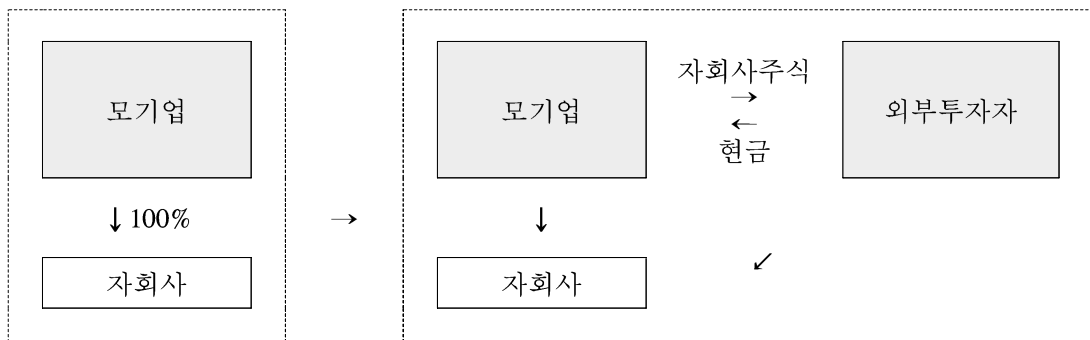
2) 분리공개(equity carve-outs)

분리공개방식(equity carve-outs)은 일반투자자나 외부투자자를 상대로 자회사 주식의 일부를 부분매각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모기업 입장에서 분리공개는 위험도를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회사지분 모두가 처분되거나 또는 일부만이 처분된다.

분리공개방식의 잇점으로는 다른 구조조정방식보다도 공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으로 인해 당해 자회사의 매각을 위한 협상이 쉽게 타결될 수가 있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분리공개방식과 기업분할방식은 서로 유사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자회사 공개에서는 모회사로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지만 기업분할에서는 현금유입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자회사 공개시에는 대개 주식의 일부만을 매각하기 때문에 모회사가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나 기업분할에서는 모회사가 더 이상 경영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II-2> 분리공개(equity carve-outs)



자료: 이재우, 前掲書,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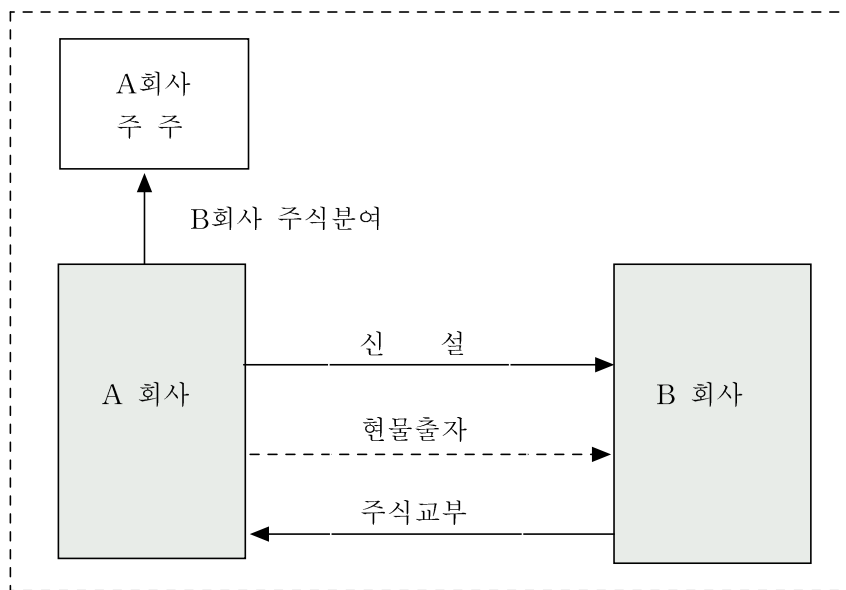
3) 분리설립 (spin-off)

분리설립 (spin-off)이란 피분할회사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

회사를 신설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인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회사가 B회사를 신설한 후에 A회사의 특정영업부문을 B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A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 경우 A회사의 주주들은 취득한 B회사의 주식을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되어 결국 A회사 총 발행주식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리설립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3> 분리설립(spin-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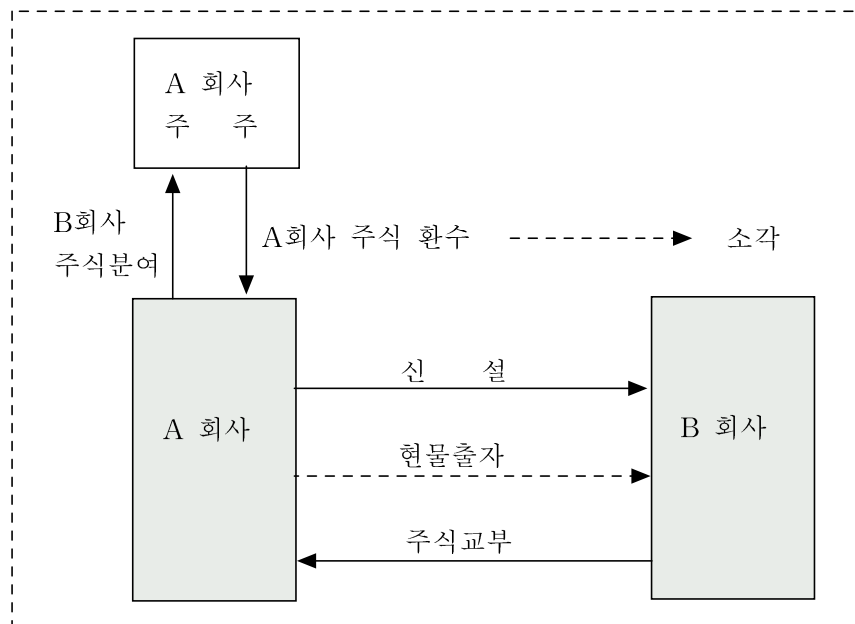
자료 : 신찬수, 이철송, 정준우,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95-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5. 12. p.54.

4) 분리독립(Spilt-off)

분리독립(Spilt-off)이란 본래 피분할회사가 자회사를 신설하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인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분리설립(Spin-off)과 유사한 방식이나 자회사의 주식과 피분할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환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A회사가 자회사 B를 설립한 후 A회사의 특정영업부문을 B회사에 현물출자하여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A회사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까지는 분리설립과 같다. 그러나 주식을 분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리독립은 A회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A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교환하여 B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독립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4> 분리독립(Spilt-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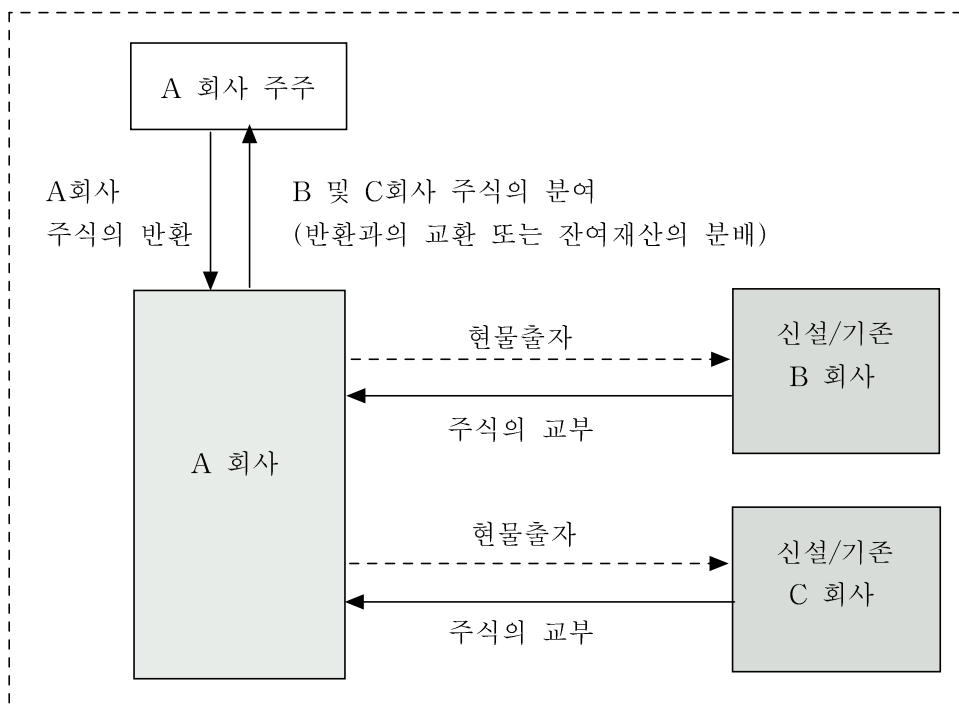


자료 : 신찬수, 이철송, 정준우, 前掲書, p.56.

5) 분리정리(Spilt-up)

분리정리(Spilt-up)란 피분할회사가 전 재산을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존회사에 모든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그 자신은 해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분할회사 A회사가 그의 모든 재산을 출자하여 자회사인 B회사와 C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B회사와 C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그 자신은 해산하는 것이다.

<그림 II-5> 분리정리(Spilt-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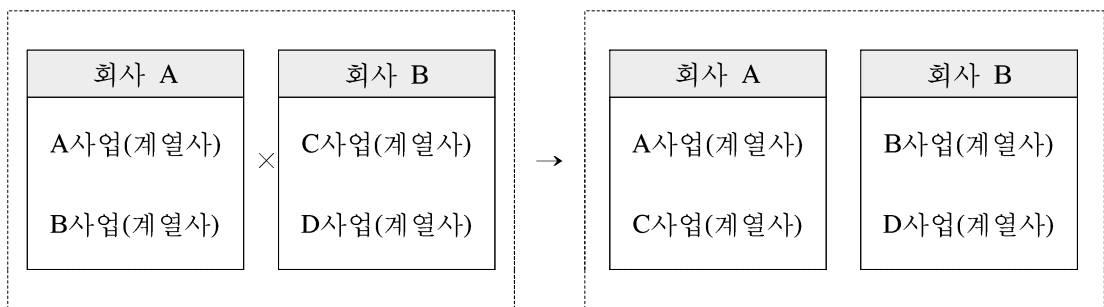


자료 : 신찬수, 이철송, 정준우, 前掲書, p.57.

다. 사업교환방식

사업교환(business swaps)방식이란 경영권을 가진 내부지분(최대주주지분과 계열사지분)을 기업집단끼리 서로 교환하는 주식교환형을 의미한다. 또한 회사는 그대로 두고 일부공장과 생산설비, 지적재산권을 서로 맞교환하는 자산거래도 있다.

<그림 II-6> 사업교환(business swaps)



자료: 이재우, 前掲書, p.32.

3. 구조조정 관련정책

기업의 구조조정이란 본래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기존의 법적 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파산한 기업의 회생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상태에서도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경쟁력이 없는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

문으로의 자원이동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정책인 셈이다. 구조조정 정책의 존재여부는 이제 그 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도정비는 국가 경쟁력 도모차원에서 자국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정책으로는 크게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기업 M&A의 활성화,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등이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으로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회계기준의 국제화 등이 있다.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은 회사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기업집단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회계정보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이익조작을 통한 분식결산이 예방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기업의 국제화측면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일조를 담당한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으로는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 소수주주들의 경영감시권한 강화 등이 있다.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사회 활성화,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자격요건부여 등이 전제되어야 효과를 보게된다. 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권한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기업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대표소송과 장부열람 등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기준을 완화하고 집단소송제도 및 누적투표제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으로는 대기업과 주거래은행간 재무구조개선 협정체결, 과다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부인 강화,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금지(2000년까지 기존보증 완전해소) 등이 있다. 대기업과 주거래은행간 재무구조개선 협정체결이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은행이 주도적 입장에서 기업의 부채비율 감축과 차입금상환계획 등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체결을 의미한다. 이 결과 대기업집단은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의 연장의 경우마다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³⁾. 과다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부인 강화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과다차입금(자기자본의 5배 초과)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도록 한 사항을 의미한다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금지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신규채무보증은 금지되며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까지 완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M&A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의 전면허용,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폐지, 출자총액제도의 폐지, 자사주 취득한도의 폐지, 정리해고의 허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의 전면허용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

3) 은행은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종목당 15%로 확대하였으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종목당 1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을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출자총액제도는 M&A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고 하여 증권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1998. 2. 14)때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자사주 취득한도의 폐지(1998. 5. 25)는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확충하기 위해 폐지한 것이다. 정리해고의 허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으로는 기업간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별부가세 면세, 취득세·등록세 폐지 등 조세감면 혜택 등이 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부록A>을 참조하기 바란다.

Ⅲ. M&A 관련세제

1. 국내 M&A 과세제도

가. 기업합병 과세제도

현행 합병에 관련된 과세제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합병회계준칙과 같은 총괄적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해 세법의 각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피합병법인 및 각 법인의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에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기업합병에 대한 과세를 이해당사자간의 거래개념에 따라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지방세 납부, 기타 관련세무처리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세법상 합병법인에 대한 규정은 회계상의 합병회계준칙과 달리 별도의 통합규정이 없다. 그러나 합병에 대한 세무처리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른다는 규정’(법인세법 제17조3항)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합병법인입장에서 세무처리를 합병회계준칙에 의해 회계 처리하는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법에서도 수용되어 이에 대한 세무

조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하 합병법인의 과세문제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평가문제, 합병차익문제, 합병차손 및 영업권 취급문제, 상호투자주식문제 등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평가문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항목의 평가에 대해서는 합병회계준칙이 준용되고 있다⁶⁾. 따라서 합병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준칙이라는 세법적용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 합병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합병차익문제

합병차익은 세법상 “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및 그 회사의 주주·사원 또

5) 선우석호, 『M&A』, 법문사, 1997.10. pp.311-328.

이우택, “기업합병관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I)”, 『상장협 연구보고서』, 94-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11, pp.77-162.

조남복, “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회계와 세무”, 『회계와 세무』, 대한세무협회, 1997.12, pp.74-87.

6)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의 피합병회사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는 출자자에게 지급한 금전·기타자산의 합계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3항)”을 의미한다.

합병차익의 구성은 발생원천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인한 합병차익,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합병차익, 합병감자차익으로 인한 합병차익, 자산의 평가증에 인한 합병차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법상 처리규정의 차이가 있다.

즉,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합병감자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증가분이므로 과세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병 전에 이미 피합병법인의 소득으로서 과세된 부분이므로 또 다시 과세소득에 산입되면 이중과세가 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이에 반하여 자산의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자산의 평가차익과 마찬가지로 보아 익금산입항목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인세법은 합병차익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하되,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건축물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는 감가상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다) 합병차손 및 영업권문제

합병차손이란 합병의 경우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서 합병교부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영업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의 개념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등(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차손 및 영업권에 대한 세무처리는 합병차손의 발생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는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갖는 무형의 가치, 즉 영업권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이 커서 생기는 합병차손의 경우는 이를 영업권 취득으로 보아 향후 5년간 균등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둘째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합병차손의 경우는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록 상각한다고 하더라도 손비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에 관련된 과세는 크게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부과문제가 있다.

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

일반적으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금부담도 없다(법인세법 제59조의2). 다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자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나) 청산소득에 대한 부과문제

청산소득이란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영업활동의 결과인 각 사업연도 소득과 대응되는 개념이다⁷⁾.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한 날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그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되어야 한다. 다만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3조5항).

7)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43조3항).

그리고,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 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 전에 고가로 매입한 후 합병하여 과세소득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로는 의제배당과 증여의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다. 의제배당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교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기타자산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하며, 그 차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입장에서 합병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아 다른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세법 제19조5호, 소득세법 제17조2항4호).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주식양도차익이 적정하게 과세되지 아니하는 현행 과세체계 내에서 합병 등을 통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부과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배

당소득은 본래 이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서 법인세를 과세받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주주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문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 의해 이익을 받은 대주주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⁸⁾.

합병시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는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합병비율을 실체가치와는 다르게 조작함으로써(이른바 ‘불공정합병’) 건실한 기업의 주주가 부실한 기업의 주주에게 사실상 재산을 나누어 준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에 소득세법상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112…34의4).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8) 여기서 ‘합병당사법인’이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피합병법인)과 신설·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 모두를 가리킨다. 그리고 ‘대주주(출자자 포함)’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4) 지방세납부

취득세의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동법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⁹⁾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지방세법 110조4호).

이밖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와 달리 등록세 과세시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가 과세된다. 즉, 합병원인으로 인해 자산의 소유권이 바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 관련세제

가) 조세의무 등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피합병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

9) 여기서 과세물건이란 지방세법 제 112조의 2 및 112조의 3에 의거해 유추해석하면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는 경우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사실상 합병법인이 납부하게 되며, 기타 다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등 일체를 승계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가지고 있던 충당금과 준비금 등의 계정은 합병법인에 인계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함께 퇴직금 지급의무도 인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게 된다.

나) 합병 이후의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문제

본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법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3항).

합병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증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①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②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기준내용연수 또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합병으로 인

하여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의 원칙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합병법인의 중간예납문제

본래 새로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한편 합병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나. 기업인수 관련제도

기업인수 관련과세제도는 크게 영업양수·도시 과세제도와 주식인수시 과세제도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1) 영업양수·도시

영업양수·도의 경우는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의 세제가 많이 변경되었다. 즉, 기업의 자산 양도, 법인간의 사업교환,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자산증여, 법인의 금융부채상환 등에 관한 세제가 개정되었다.

자산매각의 경우 양도회사에게는 매각차익의 52.8%¹⁰⁾의 납부세액 중에서 특별부가세 50%의 감면혜택이 있는 반면에 양수회사는 인수가액의 5.8%¹¹⁾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교환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하고 있다. 현물출자 분할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으로 처리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양수법인의 입장에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

2) 주식인수시

주식거래에 의한 기업인수의 경우도 매매대상주식이 상장주식(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은 제외됨)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인 거래대금의 0.15%)와 농어촌특별세(양도가액인 거래대금의 0.15%)를, 코스닥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인 거래대금의 0.3%)만 부담하면

10) 52.8%는 특별부가세 20%, 법인세 28%, 법인세할 주민세 4.8%을 의미한다.

11) 5.8%는 취득세 2%, 등록세 3%, 농특세 0.2%, 교육세 0.6%이고 수도권은 5배 중과세되어 29%이다.

된다. 주식거래에 의한 기업인수시 발생할 수 있는 세제는 크게 주식 매수인의 경우와 주식 매도인의 경우로 구분되어진다.

가) 주식 매수인의 경우

매수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주식취득자금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과세될 수도 있다. 즉, 거래가액이 시가 또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에 의한 기준금액보다 현저하게(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인수자와 매도자가 특수한 관계인 경우¹²⁾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기부금은 세무상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1)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매수자가 개인의 경우에는 매수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51%이상)에 대한 취득세와 주식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51% 이상)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중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2조 및 제105

12) 매도자 또는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도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이 매도자 또는 인수자와 특수관계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조).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저가로 주식양수, 신주인수권 행사,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권 행사의 경우 등에는 증여의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매수법인의 법인세법상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과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부동산등의 취득세부과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주식 매도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대상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인 거래대금의 0.15%)와 농어촌특별세(양도가액인 거래대금의 0.15%)를, 코스닥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인 거래대금의 0.3%)만 부담한다. 또한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20%)를,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 중소기업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10%)와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인 거래대금의 0.5%)를 부담한다.

(1)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적용되고, 취득당

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2)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당해 연도 특별손익에 반영되어 부과된다. 특히, 골프장 등 특정업종의 법인으로서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회사의 주식과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3년 이내에 50%이상 양도할 경우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대상에 포함되어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다. 구조조정 관련 과세제도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가) 합병차익중 자산평가증에 대한 이연과세(법인세법 제14조의5)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해 합병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과세를 이월함으로써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과다차입금 이자손비부인제도 보완(법인세법 제18조의3)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동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 조세감면규제법

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감법 제31조)

합병장려업종¹³⁾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13) 합병장려업종이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한 업종을 말한다(1993년 1월 상공부장관고시로 147종의 합병장려업종이 고시된 바 있다).

함)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감법 제33조의2)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까지는 양도소득세 등을 50% 감면하던 것을 100% 면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하였다.

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제35조)

산업합리화대상기업¹⁴⁾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른 합리화대상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14)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란 다음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조감법 제39조)

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한 관련자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조감법 제40조)

산업합리화대상기업간의 합병 중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중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의 경우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마)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조감법 제40조의2)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을 한 후에 일정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조감법 제40조의3)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

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사)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조감법 제40조의4)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시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시킬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 법인 양도·양수에 대한 구조조정지원 조세특례(조감법 제40조의5)

주식양수·도를 통한 법인의 양수·도로써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차입금과다법인 판정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었으며 주식을 양수한 기업이 취득한 주식도 지급이자 부인대상 타법인 주식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51%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면제가 되었다.

자산부족액의 익금산입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었으며, 주식 저가양도의 경우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와 인수 등을 이유로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시 실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경우 모두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다.

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감법 제40조의6)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차)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감법 제40조의7)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자산가액 중 당해법인의 이월결손금과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당해 수증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카)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조감법 제40조의8)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사업용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교환취득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감법 제40조의9)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동안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면제된 세액의 5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20%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파) 무상증여 및 자산교환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감법 제113조, 제114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간의 무상증여나 자산교환시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2. 외국 M&A 과세제도

외국의 합병과세제도를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에 대한 기타 간접세과세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¹⁵⁾.

가. 미 국

미국은 내국세입법상 비과세 재조직(tax-free reorganization)에 관한 조항을 두고 기업의 합병에 대해 일정요건¹⁶⁾을 갖춘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

15) 김유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7-02, 한국조세연구원, 1997. 4. pp.58-85.

이우택, “기업합병분할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1998. pp.16-40.

16) 비과세 재조직의 일정요건이란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Federal Tax Course).

① 재조직은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② 재조직은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은 사업목적을 가져야 함.

하는 이득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특례규정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비과세 재조직의 유형에는 7가지유형¹⁷⁾이 있는데 기업합병과 관련된 비과세 재조직유형은 A형 재조직이다(IRC 제368조 (a)). A형 재조직은 흡수합병(Merger), 신설합병(Consolidation),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등 4가지 경우의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A형 재조직은 의결권주식만을 가지고 비과세 재조직형태를 취하는 B형, C형보다도 조직신속성측면에서 우월성을 갖고 있다. 즉,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는 흡수합병에 대해 어떠한 요구조건도 없으며 다만, 재무성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는 소유지분 계속성의 비과세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어도 대가의 50%이상이 주식이어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다. 그 주식종류로는 의결권 및 무의결권, 보통주와 우선주, 또는 양자가 혼합된 주식 등 모두가 허용된다¹⁸⁾.

③재조직전의 기업의 주주에 대해 지분의 연속성이 있어야 함.

④변경된 법인형태를 기준으로 사업이 계속되어야 함.

연방대심원에서는 비과세 재조직의 요건으로 소유지분의 계속성(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 사업체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 진실한 사업목적(Bona fide Business Purpose), 단계적 거래의 원리(Step Transaction Doctrine)을 요구하고 있다.

17) 비과세 재조직의 7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상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A형 조직개편)
- ②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B형 조직개편)
- ③ 다른 회사의 자산의 취득(C형 조직개편)
- ④ 자산의 이전(D형 조직개편)
- ⑤ 자본구성의 변경(E형 조직개편)
- ⑥ 회사형태의 변경(F형 조직개편)
- ⑦ 회사의 정리(G형 조직개편)

A형 재조직은 합병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州法 및 연방법 등 제반 법률에 준수할 필요가 있다. 각 州法 및 연방법에서는 합병에 대해 대부분 주주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합병에 대한 부결권 행사,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내국세입법상 비과세 재조직에 관한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기업들간의 비과세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가 없다. 즉, 비과세 재조직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지분풀링법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자산거래에 대한 이득과 손실부분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허용된다.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은 합병의 결과로 인한 어떠한 손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환차금(boot)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에 대한 이득부분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18) John L. Kramer & Lawrence C. Phillips, "Federal Taxation 1996," Prentice Hall, 1996, pp. 7-14.

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 주식 또는 증권이 합병에 따라 서로 교환되는 경우 이로 인해 얻은 어떠한 손익도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과 더불어 현금이나 기타 자산(boot)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득 부분만(손실은 인식하지 않음) 과세대상이 된다.

4) 합병법인에 대한 기타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인지세 등이 면제된다. 그리고 판매세는 연방소득세법과 주법에 합치되는 합병에서는 면제된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세는 몇몇 행정구역내에서 과세하기도 한다.

나. 일 본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의 장부에 기록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합병대가로 발행된 신주의 명목가격과 피합병법인의 순장부가액 중 큰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발행된 신주의 명목가격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현찰로 받은 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 주주입장에서 교부받은 신주의 명목가격과 현찰로 받은 대가가 본래 피합병법인의 불입자본금의 해당주주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서 20%가 과세된다. 이 세금은 초과분이 생기지 않도록 발행주식의 명목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피할 수가 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도 이와 동일하다.

4) 합병법인에 대한 기타 간접세

부가가치세의 성격인 영업세는 부과되지 않고, 등록세는 발행자본의 0.15%,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장부가액의 0.6%, 취득세는 비과세, 인지세는 합병계약건당 4만엔이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과거 합병에 대해 과세¹⁹⁾를 원칙으로 한 조세정책이 이루어졌으나 합병에 대한 조세부담해소를 위해 1928년 한시적 기한이 정해진 조세우대정책으로 개정하였고 이후 1987년 재정법 개정으로 합병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영구적인 제도로 정하였다.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비과세합병에 해당하는 일정한 조건²⁰⁾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상각자산의 승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양도한 시점에서 과세하고, 상각자산의 승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영업상 이익으로 이월받거나 합병회사·피합병법인의 영업상의 손실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세무상으로는 합병법인의 영업상 이익에서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손실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비과세합병에 해당하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피합병법

19)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의 합병출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50%의 소득세, 장기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 비과세합병에 해당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법인세 과세를 받는 회사가 출자하는 합병’과 ‘합병출자를 받는 회사가 프랑스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인의 경상이윤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과세합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이윤 이외에 자본이득, 적립금, 청산잉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비과세합병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불인정하지만 개인주주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주주의 경우 합병법인의 실질가격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장부가액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4) 합병법인에 대한 기타 간접세

단일세율(1,220 프랑스프랑)의 등록세는 합병법인이 지불한다.

라. 독일

독일은 합병에 대해 기존의 상법을 개정하여 사업재편법(Umwandlungs-gesetz)으로 제정하였다. 사업재편법은 합병, 분할, 재산의 승계, 회사형태의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용적으로 사업재편법과 관련된 제반 세제를 조정하기 위해 사업재편세법(Umwandlungssteuergesetz)이 제정되었다. 사업재편세법은 자본이득과세

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동시에 이월결손금, 감가상각, 자산 평가 및 비과세준비금 등에 대하여 승계인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본래 피합병법인의 최종 B/S 상 기록된 가격으로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UmwStG 제12(1)조, 제4(1)조). 또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얻은 대차대조표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UmwStG 제12(2)조)²¹⁾.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기업해산시 잉여금성격인 적립금에 대해 청산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독립사업단위 형성, 장부가 승계요건 등 비과세요건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해산에 대해 과세가 일어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 대해 장부가로 기재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잉여금성격인 적립금이 후에 합병법인의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자산양도에 대한 보상대가가 없는 경우, 전체 보상대가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구

21) 대차대조표상에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양도자산의 장부가격이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자산의 양도가격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는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자본소득으로 기록되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자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그 초과금액이 합병법인의 B/S상에 이윤으로 남아있지만 이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반대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산은 공정한 시장가격 또는 보상대가의 사용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개인주주가 기업자산 또는 개인자산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개인주주가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합병에 대한 대가를 주식 이외의 것으로 받을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진다.

4) 합병법인에 대한 기타 간접세

부동산양도세만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자본세, 주식교환양도세는 폐지되었다.

마. 시사점

미국에서는 합병의 경우 소유지분의 계속성, 진실한 사업목적, 사업체의 계속성, 단계적 거래의 원리²²⁾ 등을 만족하면 비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22) 단계적 거래의 원리는 납세자가 조세혜택을 얻기 위해 다단계거래로 과대 포장하여 조세회피를 꾀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단일거래형태로 단순화하여 비과세형태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장이다. 여기서 비과세의 의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승계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히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는 비록 비과세 재조직제도가 합병거래형태에 대해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지원정책이지만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일삼는 기업활동은 규제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는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우리 나라의 합병과세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비과세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과세이득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절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합병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현행 합병과세제도를 비과세를 위해 약간만 보완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을 일본의 합병과세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인세 과세를 받는 회사가 출자하는 합병 및 합병출자를 받은 회사가 프랑스회사인 경우에 한해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법인으로 양도하는 고정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합병시 발생한 개별자산에 대한 양도손실부분도 합병이후 해당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도록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하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이후 5영업연도내에 영업상의 이익으로 상계할 수 있는 혜택도 부과된다. 이런 점은 현행 우리 나라 세법상 합병차익에 대해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과세이연제도의 조세혜택사항을 부여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모든 고정자산에 대해

과세이연제도를 허용하였다는 점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를 허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합병세제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진일보한 조세혜택사항이 주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업재편법의 제정에 따라 사업재편세법의 내용이 결정되므로 합병에 관해 사업재편법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최근 사업재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재편세법도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자본이득과세의 제거, 이월결손금의 승계, 감가상각·자산평가 및 비과세준비금 승계 등이 허용된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재편에 대한 탄력적 운용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하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의 세법개정의 흐름 및 배경을 주목하여 이를 참고한다면 우리의 세제개선의 방향에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다.

<표 III-1> 각국별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비교

	우리 나라	미 국	일 본	프 랑 스	독 일
합병법인 과세	자산의 평가 증 발생시 과 세(토지·건축 물에 의한 평 가증 발생시 과세이연방식 적용으로 비 과세처리)	비과세 재조 직의 일정조 건 충족시 비과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합병대가보다 클 때에는 과세	비과세합병조 건 충족시 비 상각자산의 양 도차익 과세이 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그 대로 기록시 비과세
피합병법인 과세	청산소득 발 생시 과세	교환차금(boo t)사용시 그 이 득 부 문 만 과세대상	합병대가가 피 합병법인의 순 자산가치를 초 과시 과세	비과세합병조 건 충족시 피 합병법인의 경 상이윤에 대해 서만 과세	비과세요건에 따른다면 청 산소득에 대 해 비과세
피합병법인 주주 과세	의제배당소득 및 증여의제 과세	교환차금(boo t)사용시 그 이 득 부 문 만 과세대상	의제배당소득 및 증여의제 과세	비과세합병조 건 충족시 의 제배당 불인정 (다만 개인주 주가 25%이상 소유와 법인주 주의 경우 합 병대가차이가 발생시 과세)	개 인 주 주 가 기업 및 개인 자산으로 25 %이상 지분 구입 및 합병 대가가 주식 이외의 것으 로 받은 경우 에는 과세
기타간접세	취득세, 등록 세, 인지세 과 세	대부분 면제 (일부 주에서 는 부동산양 도세 과세)	등록세, 인지 세 과세	등록세 과세	부동산 양도 세 과세

IV. M&A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M&A의 경우 세제상 부담요인으로는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부인문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소멸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과문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불허문제, 포함주식이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문제 등이 있다. 또한 합병시 증여 의제문제와 신설합병시 신주권의 발행에 따른 인지세의 부담 등이 있다.

<표 IV-1 > M&A관련 세제부담요인

	관련법규	내 용
청산소득 과세	법인세법 45조	소멸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28%) 부과
	법인세법 43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불인정
의제배당 소득과세	법인세법 19조, 소득세법 17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10~40%) 또는 법인세(28%) 부과
합병차익 과세	법인세법 15조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하는 합병차익은 익금 산입(단, 토지 및 건물은 과세이연으로 처리)
취득세	지방세법 110조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합병을 통해 취득한 토지 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
등록세	지방세법 131조	취득자산 등기시 등록세 부과
인지세	인지세법 3조	주권발행시 1매당 200원 인지세 부담
증여의제 과세	상속세·증여세법 제38조	특수관계인에 의한 법인합병시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부과

따라서 이러한 세제 부담요인을 해결하면서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유형고정자산 평가증에 대해 과세이연제도 적용

가. 현 황

과거 법인세법상 합병차익 중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합병시점에서 과세되어 시가에 의한 합병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합병에 대한 조세부담을 우려해 되도록 합병차익을 줄이거나 장부가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래 합병자산의 평가증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합병시점에서 과세한다는 것은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세법에서는 건물, 토지의 평가증에 의한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하여 세금부담을 덜어 주었다.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상계항목으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여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해 합병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과세를 이월함으로써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나. 문제점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 가운데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하여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발생시 이에 대한 과세이연제도적용은 M&A의 활성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기계장치,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등 기계류의 경우 과거 환율이 낮게 되어있을 때 구입했던 유형고정자산들이 현재 환율영향으로 재취득원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합병시 합병차익의 과다에 따른 세금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 개선방향

토지 및 건축물이외의 여타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평가증에 의한 합병차익 발생시 이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방향으로 세무부담을 줄여야 한다. 특히, 기계장치,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등 기계류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를 꼭 적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2.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허용

가. 현 황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에 관하여 현행 법인세법상 기본통칙에 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 우에 합병 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 지 아니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5-1-6…43)’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합 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자산의 평가증 사항 제외)에는 이를 합병차익으로 보아 익금 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기본통칙 2-8-2…15)’라고 되어 있다.

나. 문제점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승계 불허규정은 현행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 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왜냐하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동 세무조정사항이 그대로 평가액에 반영되므로 세무조정사항 승계문제는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조정사항 승 계불허규정은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부담이 없는 장부가액에 의 한 합병을 규제함으로써 합병의 활성화측면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M&A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합병의 법률적 성격상 피합병법인의 경제적 실체가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그대로 용인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개선방안

장부가액에 의한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인 사외유출항목²³⁾에 대해서는 자산·부채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세무조정사항 승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²⁴⁾.

23) 사외유출이란 기업의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이 분여된 것이므로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를 지우게 된다.

24) 사외유출사항이 세무승계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외유출 항목의 성격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면서도 세무회계상으로 자본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차기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이 유발되지 않아 현행 자산·부채 가치에 대한 왜곡이 없다는 점이다.

3.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합병법인 승계허용

가. 현 황

우리 나라는 현재 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할 수 없다는 규정(국세청예규법인 261-154, 86.1.17)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납입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자본금은 합병으로 인해 증가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법인세법 제43조5항)에 따라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합병법인 승계가 불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일정조건을 충족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해주고 있다. 즉, M&A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에는 비과세 재조직의 일정요건인 소유지분의 계속성, 사업체의 계속성, 진실한 사업목적, 단계적 거래의 원칙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모든 경영성과들이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승계가 허용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 하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이후 5사업연도 이내로 영업상의 이익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²⁵⁾.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를 불허하였으나 사업재편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합병이 상업등록부에 기록되고 합병법인이 그 사업을 계속한다는 조건하에 피합병법인의 이

25) 이우택, “기업 합병분할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1998. p.30.

월결손금승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²⁶⁾.

나.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 재벌그룹의 구조조정방식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의 하나는 계열사 통·폐합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방식이다. 이런 경우 적자가 누적되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이 매우 높은 기업과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구조조정차원에서 합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가 불허되어있어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된다. 즉,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 불허규정이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M&A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률상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경제적 실체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승계 또한 포괄승계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당위성도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M&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이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어 경영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26) 이우택, 前掲書, p.38.

다. 개선방안

재벌그룹내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를 원칙적으로 용인해주어야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승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도 미국과 같이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소유지분의 계속성, 사업체의 계속성, 진실한 사업목적 등 정당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승계를 허용하는 안의 채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을 시도하는 회사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게 된다면 역합병²⁷⁾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역합병의 세제규제조항(법인세법 제8조 1항의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27) 역합병이란 합병의 세제혜택을 위해 결손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후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의 완화

가. 현 황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발생시 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청산소득이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합병대가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미한다. 청산소득은 본래 법인의 각 사업연도동안 미실현된 자산의 증가분이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을 계기로 인해 시가로 실현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산소득은 법인의 청산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은 가치 증가분을 청산시점에 확인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점 때문에 청산소득은 법인세와 동등한 세율로 적용하게 되어 납세의 무자인 합병법인입장에서 이중과세로 비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법상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합리화대상기업간의 합병 중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간의 합병 등에 관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포함주식이 있는 경우 청산소득계산의 특례규정²⁸⁾이 적용되고 있다.

28) 청산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이란 포함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포함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는 규정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나. 문제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면 그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납부해야 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을 승계납부한다는 의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포합주식에 대한 청산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M&A의 원활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세규정이다. 특히,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거래²⁹⁾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³⁰⁾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인정하여 청산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포합주식에 따른 청산소득계산의 특례규정에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의 판단기준을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부당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29) 비상장주식 양도시 20%(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양도소득세 부과 (소득세법 제104조 1항 4호)

30) 피합병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소유주식 금액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8조 1항 1호)

에 포함주식의 취득에 있어서 거래내역이 전혀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면 현행 세법의 규정과 기업거래활동간에 괴리가 발생되어 혼란이 야기될 문제점이 있다.

다. 개선방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행 조세특례규정으로 정하여진 ‘합리화대상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및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의 경우’ 처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라고 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합리화대상기업의 요건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경우’ 와 같은 사항이 첨가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다.

만약 전반적으로 청산소득에 대해 비과세 조건에 편입이 어렵다고 하면 부분적이라도 포함주식에 대한 청산소득계산 특례규정의 획일적 적용을 배제하고, 포함주식의 취득동기, 시기, 취득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¹⁾.

31) 이우택, “기업합병관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 『상장협 연구보고서』, 94-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11, p.167.

5.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제외

가. 현 황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금전의 가액이 당초의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한 것으로 의제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4호).

나. 문제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문제는 세무처리상 문제점과 실무상 문제점으로 구분되어 진다. 세무처리상 문제점으로는 합병차손익액의 결정요인인 합병대가로 교부되는 합병신주의 평가액산정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평가문제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은 합병신주의 평가액산정 문제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평가문제를 매수법³²⁾으로 회계처리하느냐, 지분풀링법³³⁾으로 회계처리하느냐의 선택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실무적으

32) 매수법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주권을 교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회계방법이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인수하므로 영업권 또는 합병차익이 발생한다. 피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33) 지분풀링법은 합병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분을 통합한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방법이다. 합병에 대하여 지분풀링법을 적용하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되고 피합병법인

로도 합병의 회계처리에 따라 세무처리가 일치해야 합병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상 이에 대한 과세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

실무상 문제점으로는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문제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 활성화에 조세부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세법 기본통칙 17-3에서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해 동일한 업종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 개선방향

합병시 의제배당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앞서 제시한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산소득 조세부담문제의 해결방안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즉,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근본적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앞서 제시한 합리화대상기업간의 합병 중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및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동종기업간의 합병 중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

의 이익잉여금이 원천별로 구분되므로 합병차익이나 영업권 등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피합병법인의 경우는 자산가액이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므로 합병과정에서 손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의제배당소득의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라고 하여 비과세처리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또 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합리화대상기업의 요건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 업의 인수와 합병이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경 우’ 와 같은 사항이 첨가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다.

6.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적용기준 완화

가. 현 황

합병시 증여의제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정 한 이익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시점에서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³⁴⁾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 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법 제38조)에 따라 적용된다. 즉, 합병시 증 여의제의 해당요건으로는 합병당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³⁵⁾.

34) 합병당사법인이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35)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증여의제금액} = (A-B) \times \text{합병후 주식수}$$

A: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 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나. 문제점

합병시의 증여의제는 본래 계열기업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합병 비율을 실제가치와 다르게 조작함으로써 건설한 기업의 주주가 부실한 기업의 주주에게 사실상 재산을 나누어준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 과세제도이다. 그러나 합병의 정당성여부를 떠나 일률적으로 합병의 증여의제조건에 따라 세금을 중과세로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의 활성화시책과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 세법상 합병시 증여의제 판단기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익산정방식중 금액기준이 현재 경제실정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있다³⁶⁾. 따라서 사회의 실질적인 소득인플레를 반영하고 합병당사자간에 합병비율결정시 합병가액에 실질적 기업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익산정방식중 1억원기준은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B: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합병비율(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를 그 법인의 합병후 주식수로 나누는 비율)

36)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익이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의 차액이 합병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비하여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와 (상기차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의 평가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기준 중 합병시 대주주의 범위 설정문제가 있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 의거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본래 세법상 소액주주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면 합병시 소액주주이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피합병법인의 주요 주주입장에서 볼 때 과세의 부담을 느껴 합병에 대한 편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합병의 증여의제적용기준인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소액주주 이외의 모든 주주로 설정하지 말고 새로운 범위를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에 대한 증여부담을 줄여야 한다.

다. 개선방향

합병시 증여의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익산정방식 가운데 금액기준인 1억원기준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상법상 소수주주한도인 3%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고려한다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합병의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증여의제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7. 합병비율산정시 관계법률간 기업가치 평가기준의 일치

가. 현황

M&A시 합병비율산정에 따른 기업가치평가는 기업의 매수·매도 금액과 주식교환비율 또는 합병교부금산정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³⁷⁾.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야만 기업을 매각하거나 합병할 경우에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M&A대상기업을 제대로 선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M&A의 실패요인으로 기업가치의 시각차이를 주 요인으로 뽑고 있다³⁸⁾.

그런데 기업가치 평가방식이 관계법률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세법상 기업가치평가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주식평가기준을 다른 세법에서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가치 평가방식이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가의 평균액”을 되어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37) M&A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평가란 통상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평가가치를 의미하나 자산(또는 영업)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대상 자산 및 부채 등의 평가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38)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M&A 실패요인으로는 기업가치차이(27.3%), 회계처리 불투명(15.9%), 금융기관 경직성(10.2%), 중개시장 미성숙(9.1%), 거시경제불안(7.9%), 노조반발(5.7%), 이면계약요구(3.4%), 기타(20.5%) 등으로 나타났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³⁹⁾)] ÷ 2”으로 되어있다⁴⁰⁾.

그리고 상장법인이 준수해야 할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신고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가치 평가방식이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 산정기준이 평가기준일전 1월간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하지 못할 때에는 본질가치이하로 한다”고 되어있다.

나. 문제점

세법상의 기업가치 평가방식과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가치 평가방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합병비율산정과 세액추정에 혼란을 겪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합병당사법인간에 서로 유리한 방식으로 기업가치 평가를 하여 합병 자체를 무산시키는 문제와 합병비율산정에 대한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의 정확한 기업가치 반영과 합병비율산정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법과 증권거래법상 기업가치 평가방식의 일치화가 필요하다.

39)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100분의 15를 의미한다.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평가방식이다.

다. 개선방향

개선방향으로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주식의 평가기준을 현재 증권거래법 ‘상장법인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기업가치 평가방식을 따르는 방법이 있다. 즉,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1월간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이외에 상대가치⁴¹⁾를 같이 고려하여 가격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현재 상장법인이 합병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규정은 비록 ‘상장법인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비해 상위규정이지만 현실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41) 상대가치는 합병당사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상장회사(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당사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경상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다음의 산식에 의해 비교·평가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text{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text{유사회사의 주가} \times [(\text{발행회사의 주당경상이익} \div \text{유사회사의 주당경상이익}) + (\text{발행회사의 주당순자산} \div \text{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div 2$$

8. 피합병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면제

가. 현 황

현행 지방세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합병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세(10%)된다(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한 후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토지가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비업무용토지⁴²⁾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15%)된다(지방세법 제112조의3).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토지에 대해 합병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해 취득세가 중과세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문제점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승계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세(10%)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합병법인이 구조조정차원에서 기존사옥을 매각하고 좀더 작은 피합병법인의 대도시내의 사옥을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42) 비업무용토지란 보통 지방세법 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의미한다.

대도시내의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가 중과세로 부과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⁴³⁾.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의 내용과 지방세법제112조 3항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⁴⁴⁾.

또한 합병법인이 구조조정차원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피합병법인의 토지를 정리해야 할 입장에서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과세관청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의 3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토지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로 추정하는 것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개선방향

합병으로 인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중 합병 이후 5년 이내에 대

43) 김종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향,”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1998. 4, p.49.

44) 즉,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학교와 3,000㎡ 규모이상의 공공청사 및 연수시설의 신설 등은 인구집중시설의 신설로 보아 그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신설행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인구집중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신설행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요건에서 제외시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0조 4호의 단서규정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사치성재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합병을 한 후 합병법인이 기업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할 때, 합병을 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요건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2호 규정에서 합병의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비업무용자산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2호 단서규정을 활용하여 합병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피합병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는 토지’로 해석하여 비업무용토지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9.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산에 비업무용토지 포함

가. 현 황

최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개정세법 중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이 합병,

사업양수·도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업구조 조정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에 따라 양도세 감면대상자산에는 사업용 부동산만이 해당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나. 문제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요건으로는 사업용 부동산만을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업무용부동산보다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무척 강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거에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들은 최근 경기하락으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인해 비업무용토지로 변질되고 있으며 토지매매 또한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 개선방향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규정에 의한 적용요건 부동산으로는 사업용 부동산 이외에 비업무용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입장에서 부동산 매각이 수월해지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 론

최근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기존의 방만한 차입경영과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핵심전략사업 부문으로 경영자원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구조를 단순화시켜야 하나 현재 각종 제도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려면, 기업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가시적인 구조조정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제지원정책이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시 조세부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제도적 걸림돌인 조세부담을 제거하고자 M&A에 대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세법개정으로 합병차익중 토지, 건축물평가증에 대해 과세이연제도가 적용되었는데 또 다른 유형고정자산인 기계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이연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가 금지되었는데, 합병이 경제적 실체의 동일한 조직변경을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합병법인 승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이 제거되어야 한다. 다섯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부담이 제거되어야 한

다. 여섯째,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에 관해서는 증여의제 산정기준이 완화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일곱째, 합병비율산정시 세법과 증권거래법간에 기업가치 평가기준이 일치되어야 한다. 여덟째, 피합병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중과가 면제되어야 한다. 아홉째,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산에 비업무용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동수, “퇴출장벽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 『KIET 정책자료』, 제10호, 한국산업연구원, 1997. 8.
- 권성문, “M&A 자유화의 내용과 파급효과,” 전경련 세미나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 2.
- 김성만, “OECD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동향,” 무역협회세미나, 한국무역협회, 1998. 3.
- 김용열, 김인중, 김희석,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KIET 정책자료』, 제10호, 한국산업연구원, 1997. 8.
- 김용욱,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제,” 『전경련 조사연구자료 산업정책』, 97-2, 전국경제인연합회, 1997. 9.
- 김유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1997. 10
- 김유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7-02, 한국조세연구원, 1997. 4.
- 김유찬, “기업합병 및 인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과세대책,” 『상장협』, 제36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 김종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향,”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1998. 4.
- 김진수,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재정포럼』, 제15호, 한

- 국조세연구원, 1997. 9.
- 김철권, “적대적 기업인수와 그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 김휘석,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세제개편방향,” 『경영과 세무』, 한국세제연구회, 1997. 12.
- 남궁훈, “OECD시대의 세제운용방향,” 『경영과 세무』, 한국세제연구회, 1997. 3.
- 서동우,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법적규제 개관,” 『경총신서』, 53,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11.
- 신찬수, 이철송, 정준우,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95-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5. 12.
- 오양호, “M&A 자유화 관련 제도적 보완과제,” 전경련 세미나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 2.
- 우창록, “기업인수·합병(M&A)의 조세문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7. 8.
- 이만우·김용훈,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 및 세무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상장협』, 추계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5.
- 이용인, “합병실무와 관련된 몇가지 논란,”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1997. 12.
- 이우택, “기업합병관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

- 『상장협 연구보고서』, 94-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4. 11.
- 이우택, “기업합병분할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1998.
- 이우택, “기업합병시 세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영과 세무』, 한국세제연구회, 1997. 10
- 이재우, “IMF체제와 기업구조조정정책,” 기업구조조정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1998. 4.
- 이제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 요해,” 『월간경리』, VOL.22, NO.4, 조세통람사, 1998. 4.
- 이학주, “기업의 합병에 관한 검토사항,” 『월간경리』, VOL.22, NO.4, 조세통람사, 1998. 4.
- 정광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 활용방안,” 세미나자료, 한국무역협회, 1998. 3.
- 정광선, “적대적 기업인수의 문제점과 대응책,” 심포지엄자료 95-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5.
- 정찬우, “기업의 구조조정 개선과 구조조정에 관한 세무상 지원제도에 대한 단상,”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1997. 10.
- 정한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방안,” 기업구조조정 촉진관련 제도의 도입방안 세미나,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7. 12.
- 조남복, “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회계와 세무,” 『회계와 세무』, 대한세무협회, 1997. 12.

황인학,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 기업구조조정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1998. 4.

조사1부 금융제도과, “금융기관 M&A 제도현황,”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7-17호, 한국은행, 1997. 12.

지호준·박용원, 『M&A』, 법문사, 1997. 12.

선우석호, 『M&A』, 법문사, 1997. 10.

전홍렬, 『증권거래법 해설』, 넥서스, 1997. 9.

임상엽, 『최신세법개론』, 상경사, 1998.

한경동, 『조세체계와 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1998. 3

법진출판사, 『1998년 대법전』, 법진출판사, 1998.

조세통람사, 『1998년 조세편람』, 조세통람사, 1998.

증권거래법 상장법인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신고에 관한 규정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原一郎, “會社分割と合併の稅務,” 會社の分割と合併(日稅研論集 第35号), 財團法人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1996.

John L. Kramer & Lawrence C. Phillips, *Federal Taxation 1996*, Prentice Hall, 1996.

Internal Revenue Code, Volume 1, Commerce Clearing House, Inc. 1995.

<부록 A> 기업구조조정관련 개정세법

I. 세제지원 의의

재정경제부가 1998년 2월 14일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법인간 기업인수·합병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 등록법인간 M&A(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경영 잘못으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한계기업을 손절매할 수 있도록 해당기업 주주(계열사)에게 채무변제액의 대부분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한계기업의 손절매가 그만큼 활성화될 전망이다.

1. 적용요건

상장법인, 협회(코스닥)등록법인으로서 부동산업 및 음식, 숙박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을 계속했으며 기업부도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액주주가 많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한정된다.

특수관계자간 기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이 기업의 총 발행주식중 일정비율(경영권 이전수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추후결정)이상을 당해주주(기업 포함)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5%이하 기존주주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혜택을 준다.

또한 주식을 양수하여 보유하게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는 법인이어야 하며 양도기업과 동일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2. 지원내용

당해 법인의 보증채무(97년 12월말이전 제한)를 주주 등이 일시에 인수변제할 때 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내에서 손비처리를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인수에 참여한 주주간 지분비율을 한도로 손비처리가 인정된다. 또한 당해 인수연도 및 그후 5년이내의 기간중 균등손비인정도 가능하다.

채무를 인계한 법인의 경우에 이월결손금 초과분이 있을때 그 초과액을 5년이내 균등익금으로 산입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계열사)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차입금 과다법인판정 대상기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매수자측 기업이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대상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라는 불이익을 받는 타법인 주식범위에서 제외한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에 대해서도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 왔으나 앞으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분식결산 등으로 자산부족액이 있는 법인이 그 금액을 손비처리시 그 금액을 익금산입으로 처리하고 귀속자나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소득처분과 법인에 원천징수납부 부담을 지웠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원천징수가 면제되어 분식결산한 대표자가 직접 관련 세금을 신고한다.

주식 등 자산을 저가양도(시가보다 30%이상 차이)할 경우 30% 초과분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계법인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손비처리로 인정하였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관련 개정세법 확정내용

1998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2월14일에 공포되었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과 같은 수정사항이 있었다.

-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해 1999년말까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소득세)를 50% 감면
- 사업교환시 자산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주주가 보유자산을 1999년말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의 자산수증익도 익금 불산입
-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확대(감면율: 50% → 100%, 감면시한: 1998년말 → 1999년말)
-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조기 실시(2002년 → 2000년)하고 대상법인에서 코스닥등록법인을 제외

II. 주요 내용

1.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조감법 제40조의 9)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함.

<적용요건>

- ① 대상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
- ② 대상부동산 : 97년 이전 취득분으로서 99년말까지 양도하는 사업용부동산
- ③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

<사후관리>

다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정

- ① 양도후 5년간 부채비율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사용직후의 부채비율보다 증가한 때
- ② 부동산 양도대금을 구조조정 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③ 양도후 3년내 폐업·해산한 때

2.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조감법 제40조의 8, 제113조, 제114조)

법인간 자산을 교환할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함.

<적용요건>

- ①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교환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② 교환법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간의 교환일 것
- ③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직전의 용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것

<세제지원방법>

- 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교환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교환취득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이익으로 인식(과세이연)

- 양도차익 취득자산의 시가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손금산입
 - 토지 : 압축기장충당금 추후 매각시 익금으로 환입하여 과세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추후 감가상각비와 상계

②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자산교환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여 과세이연함.

③ 자산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 전액 면제

3. 주주의 자산 증여에 대한 지원(조감법 40조의7)

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비과세

수증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당해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수증익에 대하여도 익금불산입함. 또한, 법인세 익금불산입 요건에 따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그러나 부채비율증가 등 법인세 사후관리요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세액을 추징함.

<적용요건>

- ① 증여내용 및 부채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부동산·주식 등 자산(다만, 금전외 자산은 97년이전 취득분에 한정하여 99년말까지 증여받을 것)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것

- ③ 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
 - 금전 : 수증후 즉시 상환
 - 부동산·주식 등 : 99년말까지 처분하고 즉시 상환

<사후관리>

다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익금산입하고 이자 상당액을 추징

- ① 부채상환후 5년내 부채비율이 부채상환 직후의 부채비율보다 증가한 때
- ② 금전외의 자산을 99년말까지 양도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 ③ 자산 수증후 3년내 폐업·해산한 때

나. 현금증여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주주의 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 ① 수증법인은 증여대상자산의 처분 및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주주가 승인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년말까지 부동산·주식 등 자산(97년 이전 취득분에 한정)을 양도할 것
- ③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을 양도 즉시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 ④ 수증법인은 증여받은 금전을 즉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

<감면율>

- ① 중소기업의 주주 : 100%
- ② 대기업의 주주 : 50 - 100%,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

<사후관리>

다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정

- ①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채상환 후 5년간 부채상환 직후의 부채비율보다 증가한 때
- ② 수증후 3년내 폐업·해산한 때

다. 증여받은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년말까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였는데 이 면제대상자산(97. 6. 30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에 98. 1. 1 이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시킴.

4. 중소기업의 부채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

(조감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

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함.

- 감면대상기업: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 감면요건: 양도대금으로 양도즉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
- 감면시한 : 99. 12. 31 이전 양도분
- 감면율 : 100%

5. 과다차입금 이자 손비부인제도의 보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기준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함.

- 대상법인 : 상장법인,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법인
- 기준 차입금배수 : 여신전문금융회사(5배), 투신사(15배)
- 시행시기 : 2000. 1. 1

<개정이유>

- 코스닥등록법인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약 80%)을 차지하고 초기차입이 불가피한 벤처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
- 동 제도의 조기사행으로 기업의 차입의존경영을 해소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

6. 금융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제도 보완

(조감법 제40조의 3)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99년말까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

<적용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을 얻을 것

<사후관리>

- ① 부동산 양도 즉시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것
- ② 양도후 5년내 부채비율이 부채상환당시 부채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 ③ 3년내 폐업·해산하지 아니할 것
- ④ 면제세액 상당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7. 기업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

(조감법 제40조의 5)

가. 세제지원 요건

1) 양도대상기업

- 대상기업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한정
- 업종제한 :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음식·숙박 등) 제외

- 사업계속 요건 : 5년 이상

2) 기업양도의 범위

- 대주주 등이 기업의 총 발행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당해 주주(기업 포함)와 특수관계없는 법인 등(5% 이하 기존주주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주식은 전액 양도할 것)
- 주식을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식수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법인)가 양도기업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정

3) 구조조정의 타당성 확인

- 양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증권관리위원회가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지명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재무제표의 공정성과 당해 기업의 경영합리화 가능성이 입증될 것)
- 양수기업이 작성한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타당성 확인서 제출

나. 세제지원 내용

- 1) 양도기업의 주주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
 - 인수·변제하는 주주

- 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
- 인수에 참여한 주주간 지분비율을 한도
- 인수연도 및 그후 5년 이내의 기간 중 균등 손비인정

- 채무를 인계한 법인

- 이월결손금 초과분은 익금불산입하되,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에 충당상계

- 지원대상 보증채무 인수·변제의 범위

- 보증채무 : '97. 12. 31 이전의 보증채무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금융기관보증 회사채 포함)에 대한 보증채무에 한정
- '98. 1. 1부터 상장법인 등의 상호보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대손충당금, 대손금에 대해 손비부인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
- 주주가 기보증한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경우에 한정(분할인수는 배제)
- 채무보증을 한 주주가 결손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도모

2)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 등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

차입금 과다법인(자기자본 2배 초과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이나 농지, 임야 등을 보유시에는 2배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고, 그리고 증자후 타법인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였음.

이때,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차입금과다법인 판정대상 차입금에서 제

외하고, 주식을 양수한 기업이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대상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하였음.

3)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개정전 세법하에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51% 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면제가 됨.

4) 자산부족액의 익금산입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은 하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분식결산한 대표자가 직접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의 원천징수납부 부담을 완화함)

5) 주식 저가양도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주식 등 자산을 저가양도시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
- 인수 등을 이유로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시 실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